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조문 정비 및 전문위원회 설치 (안 제4조, 제5조, 제8조 ~ 제9조의2)

- 위촉위원 성별 비율 변경
- 재심의 안건은 소위원회로 개최 가능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 신설

나. 법령 위임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규정 신설 (안 제15조)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규정 제외 조항 신설
-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내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다. 법령 위임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120%까지 완화

라.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의 확대 및 사용기준 신설 (안 제18조)

-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강화
 - 중단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예치금 사용기준 신설
- 마.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대행업무 범위 확대(안 제24조)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
- 바.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 (안 제36조)
- 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삭제 (안 제41조 ~ 제42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삭제

3. 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불임)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출도서 및 심의절차”를 “제출도서”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촉하되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9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등의 규정에”를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본 개정 조례 시행 전에”를 “조례 제843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34조 개정 시행일 이전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및 보수
 3.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및 보수
 4.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
-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제3호”를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을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대상건축물

제24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건축물
6.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및 협의사항 변경 대상건축물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3호”를 “제6호”로, “허가 또는 협의”를 “허가, 신고 및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4호”를 “제24조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4호”를 “제24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4조제5호”를 “제24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및 제10호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통시장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5퍼센트”를 “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퍼센트”를 “7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공개공지 등은 전면에 설치하고”를 “따라 공개공지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식재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식수대·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제30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동 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를 “완화”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

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7조제3항 중 “제86조제2항”을 “제8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6조제2항제2호”를 “제86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80조제4항”을 “제80조제4항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 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고 법 제80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① ~ ③ (생 략)	제4조(기능)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u>제 출도서 및 심의절차</u> 는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 ----- ----- <u>제출도서</u> ----- ----- -----.
제5조(구성) ① · ②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u>위촉하되 위촉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 위원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 다.</u>	③ ----- ----- ----- -----. ----- ----- ----- <u>위촉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u>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u>

⑤ (생략)

⑥ (생략)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

촉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8조(회의) ① -----

-----.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삭제>

<삭제>

라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신 설>

제9조(소위원회) ①·② (생략)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④ ~ ⑥ (생략)

<신 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② (생
략)

<신 설>

⑨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9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제
심의 사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
조제2항 및 제4조의4에 따라 건
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에 대해서는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
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
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

<신 설>

③ (생 략)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4. (생 략)

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
----- 등에 -----

3. 4. (현행과 같음)

5. 본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건축
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하는 거
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생략)

<신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
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신설>

5. 조례 제843호 구미시 건축 조
례 일부개정조례 제34조 개정
시행일 이전에 -----

6. (현행과 같음)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삭제>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
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
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
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
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
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
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 1천제곱미터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
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u>및 보수</u> <u>3.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및 보수</u> <u>4.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u>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신고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법 제27조제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 제11조제3항제3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① -----

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다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구미 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업무대행건축사로 등록된 자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 변경허가 대상건축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허가 대상건축물

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신 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 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정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
협회의 대상건축물

6.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
고사항 및 협의사항 변경 대
상건축물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건축물
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
상건축물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협
의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2. 제24조제4호에 따라 사용승
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임시사용
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50퍼
센트)

3. 제24조제4호에 따라 임시사
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 : 30퍼센트

4. 제24조제5호에 따른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③ (생략)

제26조의2(수시점검의 실시) (생
략)

<신설>

-----.

1. ----- 제6호 -
----- 허가, 신
고 및 협의 -----

2. 제24조제7호 -----

3. 제24조제7호 -----

4. 제24조제8호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수시점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및 영 제61
조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
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②
(생략)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및
제10호 규정 -----

-----.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
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
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
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2조의2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
설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신 설>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생 략)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
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
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
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생 략)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은 전면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

다른 골프장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의 비율은 대지면적의 100
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5퍼센트 이
상

2. -----

----- 7퍼센트 이
상

3. (현행과 같음)

③ ----- 따
라 공개공지 등은 -----

-----.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
상을 제29조의 식재기준에 따

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의 식재기준에 의해 식재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서 유효높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조경·벤치·파고라·분수·식수대·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이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 2제 4항에 따라

라 식재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식수대·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삭 제>

④ -----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 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을 완화 적용하는 경우 공개 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대해 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옥내의 공개공지 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 적은 2분의 1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 설>

제36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들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 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하여 전면 도로의 너비는 대지

----- 완화

-----,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 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 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삭 제>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에서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 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간"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 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
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
항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전면 도로의 반대
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
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
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
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
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
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
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한다) 상호간에(대지 사이에 도
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제86조제3항 -----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2. (생략)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④ (생략)

-----.

④ ---- 제86조제3항제2호 ----

-----.

1. 2. (현행과 같음)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80조제4항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고 법 제80조제4항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친환경 건축물의 인증)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구미시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2. 민간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 건축물 사업 추진 시 친환경 설계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행과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책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

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별표 11에 따른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대한

<삭 제>

<삭 제>

심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5조(적용의 완화)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

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③ ~ ⑤ 생략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② 생략

③ 삭제 <2015.5.18>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③ 생략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2012.2.22>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 ⑥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 4. 생략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⑤ 생략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1. ~ 2. 생략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2]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1. ~ 7. 생략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 10. 생략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생략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1. ~ 2. 생략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생략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생략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

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의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생략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
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
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7.6>]

제14조(용도변경) ① ~ ⑤ 생략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
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1. ~ 14. 생략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 ⑩ 생략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1.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전문개정 2008.10.29]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공동주택-150세대이상)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략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② ~ ③ 생략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1. ~ 4. 생략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정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정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생략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1. 삭제 <2014.10.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전문개정 2008.10.29]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생략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14.11.28]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② 삭제 <2006.5.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⑤ ~ ⑥ 생략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생략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마. 생략

3. 생략

④ ~ ⑥ 생략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3.3.23, 2014.5.28>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
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
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신고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에 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건에 대해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실시하여 수수료 발생.
- 건축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내실화를 추구하고자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소요예산액 : 82,454,000원
 - 신고 : 건축과 [1,040시간^① × 42,000원^② × 0.2^③] = 8,736,000원
민원봉사과 [1,336시간 × 42,000원 × 0.2] = 11,222,400원
 - 사용승인 : 건축과 [828시간 × 42,000원 × 0.8] = 27,280,800원
민원봉사과 [1,032시간 × 42,000원 × 0.8] = 34,675,200원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산정 근거
 - ① 소요시간 : 건축신고건수 × 4시간
 - ② 단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 적용
340,765원(기술사의 노임단가) / 8(시간) ≒ 42,000원/시간(백단위 절사)
 - ③ 수수료율

- 건축신고 : 당해 건축물수수료 20%
- 사용승인 : 당해 건축물수수료 80%(임시사용승인 30%)

4. 작성자

- 건축과 건축담당계장 김 상 만 (480-5511)
○ 건축과 시설7급 박 규 태 (480-5512)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과장	조문배
	담당	김상만
	담당자	박규태 (480-5512)